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세계적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2개월 이내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부속서 3-다**  
**원산지 규정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약정**

1. 이 장에서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이 이행 약정에서 규정된 형식을 따를 수 있다.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은 이 이행 약정에서 제공된다.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러한 지침은 완성된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
2. 특혜관세대우 취득을 위하여,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읽기 쉽게 작성하고 제3.19조에 따라 영어로 그리고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예시 1**

**원산지 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 송장 또는 상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이름 및 직위를 표기한다]은 [수출자/생산자/생산자 및 수출자] (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로서 이 송장에 열거되어 있는 상품이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대한민국/뉴질랜드] (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가 원산지임을 신고한다.

비고:

서명 \_\_\_\_\_ 날짜: \_\_\_\_\_

##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원산지 신고서는 영어로 작성되고, 신고 대상 상품 관련 송장에 이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신고서의 '비고' 란에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정한다)
- 나.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정한다)
-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 마.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 바. 원산지 신고서의 날짜, 그리고
- 사. 제3.19조(원산지의 증명) 제7항나호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예시 2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신고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뒷면에 작성지침이 있음)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치시오.

<p>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p> <p>전화번호:           팩스:</p> <p>이메일:</p> <p>참조 번호:</p>	<p>2. 포괄증명기간:</p> <p>(연도/월/일) (연도/월/일)</p> <p>_____/_____/_____/ 부터 ____/____/____/ 까지</p>				
<p>3.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p> <p>전화번호:           팩스:</p> <p>이메일:</p> <p>참조 번호:</p>	<p>4.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p> <p>전화번호:           팩스:</p> <p>이메일:</p>				
<p>5. 상품(들)의 품명</p>	<p>6.</p> <p>HS 세번</p>	<p>7.</p> <p>특혜 기준</p>	<p>8.</p> <p>생산자</p>	<p>9.</p> <p>가치 평가</p>	<p>10.</p> <p>원산지 국가</p>
<p>11. 비고:</p>					

본인은 다음을 확인한다.

-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문서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 본인은 이 신고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신고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신고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

이 신고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 쪽으로 구성된다.

12. 서명권자의 서명:	회사:
이름:	직위:
연도/월/일 날짜: -----/-----/-----	전화번호:                      팩스:

##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서 방식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지침이 양식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이 문서는 수출자가 읽기 쉽고 빠짐없이 작성하며, 신고서 수입자가 소유한다. 이 문서는 또한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기재한다.

제2란: 이 신고서가 12개월(포괄증명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한국 또는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신고서가 포괄 신고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이 신고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신고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한다.

제3란: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1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기재한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에 기술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바랄 경우, “요청에 따라 세관에 제공 가능함”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가능하다.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5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신고서가 상품의 단일선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 가능할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송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 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 번호를 기재한다.

제6란: 제5란에서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아래 규정된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주: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한다.

#### 특혜 기준

- A. 그 상품이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주: 그 영역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가 되는 것은 아니다.
- B.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하나 이상의 재료는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서 규정된 대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의 정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C.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그 상품의 세번에 적용되는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그 규정은 세번 변경과 가치 평가 간 선택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상품은 또한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제1절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D.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 재료가 필요한 세번 변경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E. 상품이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근거하여 합의된 대로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제8란: 제5란에서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를 기재한다.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를 기재하고 이 신고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한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신고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 제9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3.4조(역내가치포함비율)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 를, 또는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 를 명기한다.
- 제10란: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KR” ,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NZ” 를 기재한다)
- 제11란: 이 란은 제5란에 기술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판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이 신고서에 관하여 비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참조 번호 및 발급 날짜를 기재한다.
-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날짜는 이 신고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다.